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723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수입 반영으로 예치금 회수수입이 당초 16,791백만원에서 32,410백만원으로 15,619백만원 증가함
- 나. 지출부문은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 운영 사업비 증액을 위해 정책사업비(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당초 29,658백만원에서 30,613백만원으로 955백만원 증액함
- 다. 예치금을 8,613백만원에서 23,277백만원으로 14,664백만원 증액 반영하여, 정책사업비를 30,613백만원으로, 예치금을 23,277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라. 수입계획 변경 내용

- 예치금 회수 15,619백만원 증액
 - (당초) 16,791백만원 → (변경) 32,410백만원

(단위: 백만원)

< 수입 부문 >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38,276	53,894	15,619	40.8%
(순수입)	(17,484)	(17,484)	-	0%
예 치 금 회 수	16,791	32,410	15,619	93.0%
예탁금원금회수	4,000	4,000	-	0%
용 자 금 회 수 (이 자 포 함)	11,609	11,609	-	0%
이 자 수 입	472	472	-	0%
기 타 수 입	4,482	4,482	-	0%
전 입 금	922	922	-	0%

마. 지출계획 변경내용

- 정책사업비(기후변화 대응 강화) 955백만원 증액, 예치금 14,664백만원 증액
 - 소규모세탁소 VOCs 저감시설 설치지원 700백만원 신규편성 ※ 1차 변경
 -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 운영 255백만원 증액 편성 ※ 2차 변경
 - 예치금 (당초) 8,613백만원 → (변경) 23,277백만원 ※ 1, 2차 변경

(단위: 백만원)

< 지 출 부 문 >						
구 분	당 초 (A)	1차 변경	2차 변경 (B)	증 감 (C=B-A)	증감률 (C/A*100)	
계	38,276	38,276	53,894	15,619	40.8%	
(순지출)	(29,663)	(30,363)	(30,618)	955	3.2%	
정책사업비 (기후변화 대응강화)	계	29,658	30,358	955	3.2%	
	용자성 사업비	22,080	22,080	-	-	
	비용자성 사업비	7,578	8,278	8,533	955	12.6%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	5	5	-	-
재무활동	예치금	8,613	7,913	23,277	14,664	170.3%

※ 최종 의회 의결액(당초, 제333회 정례회) 대비 재무활동 20% 초과(170.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¹⁾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가 156억 1,900만원 증가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①**예치금**을 146억 6,400만원 증액하고 ②**다른 정책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9억 5,500만원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²⁾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출계획중 ①**정책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296억 5,800만원)보다 3.2%, 9억 5,500만원³⁾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 ②**다른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86억 1,300만원)보다 170.3%, 146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2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일부 금액을 신규사업 등에 편성하여 기존에 운용 중인 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수·지 균형을 일치시키고자 동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것으로

1)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소규모세탁소 VOCs 저감시설 설치지원(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주민 수요반응 서비스 운영(2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함

-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⁴⁾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⁵⁾에 따라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기후변화 대응 강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출한 것이나,

- 정책사업인 **기후변화 대응 강화**의 하위 세부사업을 신규 지출계획하거나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임에도 **비용자성 사업비**로 포괄하여 지출액과 증액규모, 증감률을 기재하여 제출한 바,
-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세부사업 또한 각각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의회의 의안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 설치·교체
4. 「에너지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장려 및 빈곤층 에너지 지원사업
5.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9에 따른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용자·지원
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개보수 및 신규 건설
7.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용자(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내 주택,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8. 노후 도시가스배관 및 정압기시설 교체비 용자
9.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용자
10.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 비용
11.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2. 기금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은 금융기관의 용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1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행정안전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5. 7, p.309~313